#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61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장동혁·박덕흠·김예지

서범수 · 인요한 · 조지연

주호영 · 조배숙 · 김상훈

백종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25 당시 전사자 유해가 발견되어 가족에 인계되어 안장되었는데, 그 후 약 60년이 지나 국방부 유해발굴단에 의해 다시 해당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되어 안장된 사례가 있었음. 이에 유족은 최초 전사자 유해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따라 유족은 최초 인계된 유해가 안장된 묘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입장으로서, 향후 2개의 묘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묘지의 관리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 규정(제2조제5호)을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복수의 유해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의 묘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 법률 제 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8조의4(묘지 관리비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1.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 관리비
  - 2.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 ②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의 유해가 최초로 발견되어 그 유족에게 인계되었으나 그 후 다시 해당 국가유공자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최초 유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복수의 묘지에 안장된 경 우에는 각각의 묘지 관리비를 지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지 관리비 적용례)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 8 전 인  제68조의4(묘지 관리비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 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 다. 1.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 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관 리비 2. 묘 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 는 경우: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②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 의 유해가 최초로 발견되어 그 유족에게 인계되었으나 그 후 다시 해당 국가유공자의 유해 가 발견되었고, 최초 유해의 진 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복수
	의 묘지에 안장된 경우에는 각 각의 묘지 관리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